

## 2026년 경기도 차세대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

경기도 수소 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해 「2026년 경기도 차세대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지원 사업」의 시행 계획 및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3월 18일

### 경기도지사

#### 1. 사업개요

##### □ 사업목적

- 정부 수소경제 육성 정책에 발맞춰 경기도 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
- 경기도 내 수소 관련 기업의 기술혁신 능력 향상 및 사업화 촉진

##### □ 지원규모 : 총 6억 원 (3개 과제 내외 선정)

##### □ 전문기관 :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

##### □ 지원분야 : 수소에너지 산업 분야 (생산, 저장, 운송, 활용 등)

##### □ 지원대상

- (수요처 제안과제) 기업, 정부·지자체, 공기업 등의 수요처에서 개발 제안한 과제 또는 단일과제에 다수의 수요처가 참여하는 R&D 과제
- (공급자 제안과제) 중소기업이 수요처(기업, 지자체, 공기업 등)에 제안 하여 공동으로 연구개발하거나 구매확약 동의를 받아 개발하는 과제

##### □ 지원내용 :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건비, 연구기자재·재료비, 시제품 제작비, 시험분석비, 연구활동비 등 지원

## 2. 지원금액 및 기간 · 사업비

### □ 지원개요

- 지원대상 : 경기도에 소재한 수소에너지 관련 중소기업  
※ 자세한 사항은 “3. 신청자격” 확인
- 지원기간 : 협약 체결일로부터 최대 2년
- 지원규모 : 과제당 2억 원/연 이내(총 사업비의 80% 이내)

지 원 분 야	사 업 내 용	지원규모	과제 수
수요처* 제안과제	- 기업, 정부·지자체, 공기업 등의 수요처에서 개발 제안한 과제 또는 단일과제에 다수의 수요처가 참여한 공동 R&D 과제	6억 원	3개 내외
공급자** 제안과제	- 중소기업이 수요처(기업, 정부·지자체, 공기업 등)에 제안하여 공동으로 연구개발하거나 구매확약 동의를 받아 개발하는 과제		

\* 수요처 : 대기업, 중견기업, 중소기업, 정부·지방자치단체, 공기업 등

\*\* 공급자 : 기업(단독), 대학 및 연구기관(공동연구) 등

※ 기업은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구분 없이 1개 과제 초과 접수 불가

### □ 기관부담연구개발비 : 총 연구개발비의 20%(현금+현물) 이상 부담

**[참고 1] 연구개발비 계상 예시** (※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지원연구개발비(도 지원금) 2억 원을 신청할 경우)

구 분	지원연구개발비 (도 지원금)	기관부담연구개발비		합 계
		현금	현물	
계산식	지원연구개발비 ≤ (총 연구개발비×0.80)	기관부담연구개발비(현금) ≥ (총연구개발비×0.1)	총 연구개발비 - (지원연구개발비 + 기관부담연구개발비(현금))	-
금 액	200,000,000원	25,000,000원	25,000,000원	250,000,000원
비 중	80%	10%	10%	100%

※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은 ‘총 연구개발비’의 10% 이상

## □ 추진절차

지원 단계	세 부 내 용	주 체	비고
사업공고	○ 「경기도 차세대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지원 사업」 공고	경기도	1차 년도
사업신청/ 서류검토	○ 서류의 적격성, 지원자격의 적합성 등 검토	신청기관 → 전문기관	
현장실태조사	○ 적격심사 통과 기업의 현장실태조사 (현물 확인 등 필요시에만 수행)	전문기관	
심사평가 및 후보과제 특허동향조사, 범위반사실 확인	○ 계획의 적정성, 기술성, 사업성 등 종합적으로 심사·평가 ※ 기본적으로 발표평가로 진행하되, 신청이 3배수 이상일 경우 서면평가 후 발표평가 실시 가능 ○ 특허동향조사 및 범위반사실 확인(선정 후보과제에 한함)	분야별 산·학·연 전문가 평가위원회 특허법인·경기도	
과제선정	○ 평가를 모두 통과한 과제에 대해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	경기도	
수정 연구개발계획서 제출(1차년도)	○ 심의·조정된 연구개발계획서 제출	신청기관 → 전문기관	
협약체결	○ 과제 승인 및 협약	신청기관 ↔ 전문기관	
사업비 지급	○ 협약에 따라 지원연구개발비(도 지원금) 지급(1차년도)	전문기관	
진도점검(6개월) 연차평가(1차년도)	○ 과제 추진실적 및 현장점검(6개월) ○ 현장실태조사 및 연차평가(1차년도) ※ 현장실태조사는 필요시 수행	전문기관, 평가위원 분야별 산·학·연 전문가 평가위원회	
수정 연구개발계획서 제출(2차년도)	○ 2차년도 계속과제에 대해 평가위원 의견 반영된 연구개발계획서 제출	신청기관 → 전문기관	
협약체결	○ 과제 승인 및 협약(2차년도)	신청기관 ↔ 전문기관	
사업비 지급	○ 협약에 따라 도 지원 지급(2차년도)	전문기관	
진도점검(18개월)	○ 과제 추진실적 및 현장점검(18개월)	전문기관, 평가위원	
최종평가 현장실태조사	○ 현장실태조사를 통한 개발완성도 및 과제추진 실적 평가	전문기관, 평가위원	
최종평가(2차년도)	○ 사업완료에 따른 최종평가(2차년도)	분야별 산·학·연 전문가 평가위원회	
사업완료	○ 공개용 최종결과 보고서 제출 및 정산금 반납	주관연구기관 ↔ 전문기관	
사후관리	○ 성과관리 (종료 후 3년) ○ 성공기술료 납부 ※ 해당 시	주관연구기관 ↔ 전문기관	사후 관리

※ 신청기관, 수행기관 = 주관연구기관, 공동연구기관(해당 시)

※ 평가, 선정, 협약 일정 등은 신청 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·변경될 수 있음

### 3. 신청자격

□ 기준일 :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'공고일 (2026.3.18.)' 기준

※ 지원과제로 선정된 경우 협약 종료일까지 신청 자격조건 유지

□ 세부 자격기준

신청기관 유형		자 격	
주관 연구기관	중소기업	경기도 소재 (①과 ② 모두 충족해야 함)	① 경기도 내 '주사무소' 또는 '등록공장'[참고 2] 설치 . 운영
			② 접수 마감일(2026.4.17.) 기준, 경기도 내 '기업부설연 구소' 또는 '연구개발전담부서' 설치 . 운영 [참고 2]
공동연구 기관	기업	경기도 내 ①주사무소, ②등록공장, ③기업부설연구소, ④연구개발 전 담부서 중 1가지 이상을 두고 있는 기업	
	대학 및 연구기관 등	경기도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	

#### [참고 2] 등록공장 및 기업부설연구소(연구개발전담부서) 기준

■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

■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'기업부설연구소' 또는  
'연구개발전담부서' ※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정 必

### 4. 신청기간 및 방법

□ 신청기간

○ 온라인 전산 등록 및 제출 : 2026.3.18.(수) ~ 4.17.(금) 17:00까지

-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 
있으므로 사전 접수를 권장하며 **접수 마감일 17:00 이후 접수 불가**

□ 신청방법 (온라인만 가능)

○ 경기도 R&D 관리시스템(<http://pms.gbsa.or.kr>) 회원가입 후 전산 제출

① 연구책임자 및 실무담당자,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 회원가입(필수)

- 접수 시, 주관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·제출

- ② 온라인 과제관리 ▶ 접수관리 ▶ 신청서 ▶ 등록
- ③ 분야별 공고선택 ▶ 기본정보 및 사업비 입력
- ④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반 서류 파일 압축하여 첨부파일 업로드
  - 연구개발계획서, 제반 서류 등 신청 서류에 신청기관 직인 또는 서명을 날인한 스캔본 업로드
  - 파일명 작성 규칙

구분	방법	내용	파일명 작성 규칙	예시
연구개발 계획서	단독	연구개발 계획서	2026수소기술개발_기업명_연구개발계획서	2026수소기술개발_00기업_1.연구개발계획서
제반서류	압축 (ZIP)	제반서류	2026수소기술개발_기업명_연번_서식명	2026수소기술개발_00기업_4.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
		압축 파일	2026수소기술개발_기업명	2026수소기술개발_00기업

**[제출 시 유의사항]**

-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및 서류, 전산에 등록된 내용 등이 허위, 위·변조,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선정 취소
- 우편 또는 방문 제출 불가 (단, 필요시 전문기관이 별도로 원본을 요청할 수 있음)
- 필수서류 누락 및 공고일 이전 발급분 서류 제출 시 사전통보 없이 결격 처리되며, 제출된 내용은 수정 불가하므로 제출 완료 전 반드시 서류 일체 확인 바람
- →  클릭 →  클릭 →  확인
- '제출'을 클릭하지 않아 최종 접수되지 않거나 제반 서류 파일 제출이 누락되는 경우에는 결격 처리될 수 있음

**□ 구비서류**

연번	서 식 명	해당 서류	
		주관	공동
①	연구개발계획서 1부 (소정 양식, 『서식1』참조)	○	-
②	주관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(해당 시)의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※ 사업자등록증 불인정 ※ 국세청 온라인 홈페이지( <a href="https://www.hometax.go.kr/">https://www.hometax.go.kr/</a> )에서 발급 가능 ※ 서류 발급일자 유효기간 : '26.3.1.~4.17.(공고일~접수마감일)	○	○
③	주관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(해당 시)의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※ 영리기관(기업)·법인사업자만 해당 ※ 서류 발급일자 유효기간 : '26.3.1.~4.17.(공고일~접수마감일)	○	○ (기업만)
④	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인정서 사본 1부 ※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온라인 홈페이지( <a href="https://www.rnd.or.kr/">https://www.rnd.or.kr/</a> )에서 발급 가능 ※ 서류 발급일자 유효기간 : '26.3.1.~4.17.(공고일~접수마감일)	○	○

연번	서 식 명	해당 서류	
		주관	공동
⑤	주관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의 최근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※ 영리기관(기업)에 한하며, 최근('25년 귀속분) 재무제표의 경우 반드시 '표준재무제표증명(국세청 발급분)' 또는 '재무제표 확인(회계사.세무사 확인본)' 원본 제출	○	○
⑥	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부(기관별) ※ 유효기간 확인 必	○	○
⑦	과제정보 공개 동의 및 유사 사업 이중 수혜 금지 서약서 (소정양식,『서식2』참조)	○	○
⑧	NTIS 제재정보 확인서 - 영리기관(기업)의 경우, 총 3부 (본인제재확인서 ①기관대표, ②연구책임자, ③소속기관제재확인서 각 1부) - 비영리기관(대학·연구소)의 경우, 총 1부 (본인제재확인서 ①연구책임자) ※ 공동연구기관(도내 대학·비영리기관)의 경우, 공동연구기관의 기관대표 본인제재확인서 및 공동연구기관(소속기관)제재확인서는 미제출 ※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누리집( <a href="https://ntis.go.kr">https://ntis.go.kr</a> ) 에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	○	○
⑨	개인정보 이용(제공·조회) 동의서 (소정양식,『서식3』참조)	○	○
⑩	기업의 법 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및 사실(부존재)여부 협약서 각 1부 (소정양식,『서식4』참조)	○	○
⑪	수요처 구매협약동의서(수요처 자유양식)	○	-
⑫	참여자격 확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(소정양식,『서식5』참조)	○	○
⑬	공동연구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(소정양식,『서식6』참조)	-	○
⑭	주관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의 공장등록증 사본 1부(해당 시) ※ 경기도 내 '주사무소' 미설치, '등록공장' 설치·운영하는 경우 제출 필수 ※ 서류 발급일자 유효기간 : '26.3.1.~4.17.(공고일~접수마감일)	○	○ (기업만)
⑮	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 각서(소정양식,『서식7』참조) (해당 시) ※ 법 위반 기업 지원 제한 기준고시(경기도 고시 제2026-8호)에 따른 법 위반 유예대상 47개 법위반 행위에 한하여 미제출시 감점 20% 적용(참고5 참조)	○	○
⑯	기타 전문기관장이 요구하는 경우 해당 서류(해당 시)	○	○

## 5. 지원제한

- 주관·공동 연구개발기관(장), 연구책임자가 아래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제외
- 주관·공동 연구개발기관(장),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을 허위 작성하여 제출하였거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 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, 선정 및 협약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**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**될 수 있음
- 기관자격, 접수서류, 수행 과제수, 인건비 계상률, 의무사항, 참여제한과 관련한 사항은 **접수 마감일** 기준으로 판단하며, 이외 과제 중복성, 신용 및 기업 상태 등과 관련한 사항은 각 요건 검토별 전문 기관 조회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
- 연구개발기관 외 외부기관을 통한 연구개발계획서 대리작성, 명의도용, 대리 발표 등 부정 행위 확인 시 선정 취소 등 중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- 각 요건의 판단기준일은 **접수 마감일**을 기준으로 함
- 본 공고문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, 「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」에 따라 지원 제외 또는 선정 취소될 수 있음

(사전) 지원 제외		
구분	내용	
(사전) 지원 제외	신청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부합성	- 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-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구분 없이 1개 기업이 복수의 과제를 접수하는 경우 - 신청과제가 해당 사업(분야)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- 기존 공고 또는 타 기관 연구개발계획서 활용한 경우
	접수서류	-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반서류를 미제출 및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
	수행이력 및 참여제한	- 현재 경기도 차세대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관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 ※ 비영리기관의 경우 연구책임자가 다를 경우 신청 가능 - 기존 경기도 차세대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관(기업, 대학, 연구기관 등) 중 2023.3.17. 이후에 수행 종료하는 주관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 ※ 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며, 대학 및 연구소는 연구책임자가 다를 경우 제외 - 주관연구기관(장), 공동연구기관(장),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기준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	과제 중복성	- 신청된 세부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의 중복성(기지원, 기개발)이 판단된 경우 ※ 다만,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선정할 수 있음 ※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음 -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 <a href="http://www.ntis.go.kr">http://www.ntis.go.kr</a> )를 통해 국가 연구개발사업으로 이미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,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 -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"중단(성실, 불성실)"이나 "불성실수행"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음

**(사전) 지원 제외**

구분	내용
인건비 계상률 및 참여 과제 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인건비 계상률 : 해당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실제 투입되는 비율 기준으로 산정하며, 수행 중인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인건비 계상률 및 기관 기본사업*(연구기관만 해당) 참여비율을 포함하여 100%를 초과할 수 없음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단,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제39조에서 정한 정부출연기관, 제 57조에서 정한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소속 참여연구자는 연평균 130% 이내에서 산정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</li> <li>* 기관 기본사업 : 정부출연연구기관,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특정연구기관,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이 정관에 따라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</li> </ul> </li> <li>- 신청 과제 인건비 계상률 최소 기준 : 참여연구원 20% 이상,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30% 이상</li> <li>- 연구책임자(세부주관책임자 포함)로 3개 초과 및 참여연구원으로 5개 초과인 국가연구개발과제를 동시에 수행 중인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이 될 수 있음</li> </ul>
의무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주관연구기관, 공동연구기관,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(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 납부,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,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한 경우</li> </ul>
신용 및 기업상태  ※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(공사)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업의 부도 (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)</li> <li>- 개인의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</li> </ul> </li> <li>- (체납)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</li> <li>- (채무불이행) 민사집행법에 기해,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(체불사업자 포함)로 등록된 경우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체납·채무불이행 관련 지원제외 적용 예외 대상 (접수 마감일 기준)    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체납·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</li> <li>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</li> <li>③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</li> <li>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</li> </ol> </li> </ul> </li> <li>- 최근 결산기준 부채비율 1,000% 이상인 경우</li> <li>- 최근 결산기준 전액자본잠식(완전자본잠식) 기업인 경우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단,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, 상기 부채비율·자본잠식에 따른 지원 제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   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접수 마감일 기준 창업 3년 미만 중소기업</li> <li>② 「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」에 따른 "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(채권은행 협약)"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(주채권은행에 문의)</li> <li>③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,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시설투자(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·의료분야의 과제의 경우 임상,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),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·자본잠식 등의 경우</li> <li>- 공고 접수 마감일 직전 회계연도의 말일 기준 부채비율이 1,000% 이상이었거나</li> </ul> </li> </ol> </li> </ul> </li> </ul>

(사전) 지원 제외	
구분	내용
	<p>자본전액잠식 상태였으나 공고 접수마감일 기준 부채비율이 1,000% 미만이고 자본전액잠식 상태를 해소한 경우로서 당해의 수정 재무제표와 외부 회계법인의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(기관 자체 가결산자료는 제외)</p> <p>-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"의견거절" 또는 "부적정"</p>

선정 취소	
구분	내용
선정 취소	- 협약체결 전, 선정된 연구기관(주관 및 공동)은 지원연구개발비의 100%에 대해 이행(지급) 보증보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※ 영리기관 및 비영리기관(대학 및 연구소)포함하여 적용 ※ 발급수수료는 연구개발비로 계상(직접비-연구활동비)
	- 사업공고 시 명시된 지원 분야와 과제내용이 상이한 경우
	- PMS(경기도 R&D과제관리시스템)에 입력한 기업 정보 및 사업비 등이 연구개발계획서 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
	- 선행특허 존재 및 회피불가 등의 사유 발생한 경우
	- 이미 개발되었거나 이미 지원된 다른 과제와의 중복성이 확인된 경우
	- 신청기관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
	-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
	- 신청기관의 귀책 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수행기간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
	- 기타 전문기관의 사정으로 관련 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
	- 접수 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
-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수행 신청자격(경기도 외 지역으로 주소이전 등)을 상실한 경우	

## 6. 기술료 납부

- 사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유·무형적 결과물은 수행기관(주관연구기관, 공동연구기관 등)의 소유를 원칙으로 함
  - 다만,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 평가가 “불성실수행”이 아닌 경우,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주관연구기관은 성공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
- ※ 성공기술료 징수 대상 및 기준은 「경기도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사용 등에 관한 운영요령」을 따름

**[참고 3] 성공기술료 징수 대상 및 기준**

**- 연구개발결과물 직접 실시에 의한 매출 발생 ※ 일시납일 경우 40% 감면**

징수대상	연구개발 과제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3년(회계연도 기준, 종료연도 미포함) 동안 해당 기업의 총 매출액이 지원금의 50배 이상 증가한 기업 (당해연도 말 매출액) - (연구개발과제 종료연도 말 매출액)
산출요율	A(지원금), B(기술 기여도), C(연구개발 결과물 제품 점유 비율), 50%(징수율 상한)
징수기술료	$0.5 \times A \times B \times C$

**- 연구개발기관 이외의 자와의 실시계약에 의한 기술료 수익 발생**

징수대상	연구개발 과제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3년(회계연도 기준, 종료연도 미포함) 이내의 기간에 기술이전 수익이 발생한 기업
산출요율	A(기술이전수익), B(기술 기여도), 50%(징수율 상한)
징수기술료	$0.5 \times A \times B$

## 7. 과제 평가기준 및 추진절차

### □ 평가기준

#### ○ 사전 적격심사

- 서류검토 : 신청자격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, 과제 중복성, 제재사항 등
- 현장조사(필요 시) : 연구개발 인프라, 사업화(양산)능력 등 현장 확인

#### ○ 서면평가(필요 시)

- 사전 검토를 통과한 과제에 한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위원단이 1차적으로 심사·평가
- 고득점 순으로 지원 규모의 3배수 내외를 발표평가 후보 과제로 선정

#### ○ 선행특허조사(발표평가 대상 과제)

- 과제별 기존 기술 관련 선행 문헌과의 유사도 및 기술의 진보성·차별성 여부 분석 등 특허성 여부 조사 ⇒ 평가위원단에 참고 자료로 제공

#### ○ 발표평가

- 사전 적격심사(서류 및 현장, 필요 시 서면평가)를 통과한 과제에 한하여 기술성 및 사업성 등을 평가위원단이 종합적으로 심사·평가
- 6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지원과제 선정

- 평가기준

평가항목	세부 평가지표	배점
개발계획의 적정성	- 사업목표 수립의 적정성과 명확성 - 보유 인프라의 적정성	15점
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	- 기술의 차별성, 진보성, 신규성 - 보유기술의 수준	30점
목표달성 가능성	- 목표달성 가능성 - 기술적 파급효과 - 기술의 개발능력	25점
개발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및 영업·마케팅 역량	- 시장규모 및 성장성 - 사업화 가능성 및 준비역량 -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	30점
<b>합 계</b>		<b>100점</b>

○ 법 위반 여부 검토(발표평가 대상 과제)

- 공고일 기준 2년 내 11개 분야 중 법 위반 내역이 있는 기업은 발표평가 총점의 20% 감점을 적용하여 최종점수 산정 ([참고4] 적용법률 참조)
  - 단, 11개 법 위반 사실 중 경미한 47개 법위반 행위(치유가 완료된 행위 또는 치유예정 행위)에 대하여 조건부 유예 적용하여 “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각서” 제출 시 감점 미적용 ([참고5] 유예대상 목록 참조)
- ※ 이행각서 미제출 시 유예 없이 총점의 20% 감점 적용

[참고4] 법 위반 적용법률(경기도 고시 제2026-8호)

적용법률		내 용
I 공정	① 공정거래법	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,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,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
	② 하도급법	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(原事業者)와 수급사업자(受給事業者)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, 균형발전
	③ 표시광고법	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·광고를 할 때 부당한 표시·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
II 노동	④ 근로기준법	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,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 기여
	⑤ 산업안전보건법	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
III 환경	⑥ 폐기물관리법	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 기여
	⑦ 대기환경보전법	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(危害)를 예방,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·보전
	⑧ 소음진동관리법	공장·건설공사장·도로·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·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, 소음·진동을 적정하게 관리
	⑨ 물환경보전법	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(危害)를 예방, 하천·호소(湖沼)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·보전
IV 납세	⑩ 국세기본법	국세,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·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 과세(課稅),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
	⑪ 지방세기본법	

**[참고 5] 법위반 사실 유예대상 47개 법위반 행위 목록 (경기도고시 제2026-8호)**

구분	법령	법위반 행위
1	공정거래법	• 지주회사 설립 불성실신고
2	공정거래법	• 주식소유 현황 또는 채무보증 현황 불성실신고
3	표시광고법	• 공정위 조사에 불출석
4	근로기준법	• 노동위, 근로감독관에 대한 불성실 보고
5	근로기준법	• 법령 등 주요 내용 게시 의무 위반(취업규칙 등에 관한 열람보장 위반)
6	근로기준법	• 사용증명서 발급 위반 (미발급)
7	근로기준법	• 근로자명부 작성 위반 (미작성)
8	근로기준법	• 계약서류 보존 의무 위반(계약서류 미보존)
9	근로기준법	•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의무 위반 (대장, 명세서 미작성)
10	근로기준법	• 연소자 증명서 비치 위반(미비치)
11	근로기준법	•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(취업관련 규칙의 신고 미이행)
12	산업안전보건법	• 산업안전지도사 등록, 등록갱신 미이행
13	산업안전보건법	• 산업지도사의 보증보험 미가입 등 필요조치 미이행
14	산업안전보건법	• 산업지도사의 직무 수행 중 작성한 서류 등에의 기명 날인 서명 미이행
15	산업안전보건법	• 중대재해 사실의 불성실 보고
16	산업안전보건법	•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 대표 참여 의무 위반(근로자대표 참여 배제)
17	산업안전보건법	• 산업재해 발생 불성실 보고
18	산업안전보건법	• 위생시설 설치장소 미제공 및 시설 이용 비협조
19	산업안전보건법	• 휴게시설 미설치
20	산업안전보건법	•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불이행
21	산업안전보건법	•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위반
22	산업안전보건법	•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 위반 (책임자 미지정)
23	산업안전보건법	• 안전보건관리 규정 작성 위반 (미작성)
24	산업안전보건법	• 안전보건교육 미실시
25	산업안전보건법	• 근로자 대표의 참석의무 미이행
26	산업안전보건법	• 불성실 보고
27	폐기물관리법	• 전용용기제조업 등록 불성실 신고
28	폐기물관리법	• 불성실 신고 보고를 통해 적합성 확인 구득
29	폐기물관리법	•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·장비에 관한 불성실 신고
30	폐기물관리법	• 폐기물의 인계·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불성실 입력
31	폐기물관리법	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불성실 신고
32	폐기물관리법	• 장부기록사항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불성실하게 입력
33	폐기물관리법	• 유해성 정보자료의 불성실 작성
34	폐기물관리법	•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미제공
35	소음진동관리법	• 타이어 소음도 측정 결과의 불성실 신고
36	소음진동관리법	• 변경신고의 불성실 신고
37	소음진동관리법	• 생활소음·진동이 발생하는 공사의 불성실 신고
38	소음진동관리법	• 소음허용기준 위반 운행자의 개선사항 불성실 보고
39	소음진동관리법	•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미실시
40	물환경보전법	•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시작 불성실 신고
41	물환경보전법	•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의 불성실 신고
42	물환경보전법	• 비점오염원 설치의 불성실 신고
43	물환경보전법	•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의 불성실 관리
44	물환경보전법	• 공유수역 관리 규정의 미이행
45	물환경보전법	• 폐수의 인계·인수에 관한 내용의 불성실 입력
46	물환경보전법	•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미시행
47	지방세기본법	•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의 성실신고 방해 행위

○ **과제선정**

- 발표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경기도에서 지원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

※ 심의·조정 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수와 과제별 예산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, 과제선정 이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조건 미달 시 선정 취소

**8. 기타 공지사항**

- 본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(기관)에 있음**

- 사업에 참여하는 자(주관연구기관, 공동연구기관, 대표이사, 연구책임자 등)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**

-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
- 경기도 범위반기업 지원 제한기준에 따른 범위반 사실 조회 (경기도 고시 제2026-8호 「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범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」)
- 기존 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 연구개발계획서 제목, 개발 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

- 범부처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(RCMS) 연계(필수)**

- 연구비는 범부처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(RCMS)을 통하여 가상계좌로 교부되며 선정기업은 RCMS 연계 가능한 참여 은행의 계좌 및 법인카드(사업비 전용카드)를 필수로 사용해야 함

- 연구개발비 부정 사용 시 제재**

- 연구개발비 부정 사용 적발 시 제재 부과금 부과  
※ 『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』 제8조부터 9조 등에 의거 부정 사용액의 5배 이내 부과
- 부정행위 기업 및 연구책임자 명단 공개
- 연구부정 행위자 경기도 지원대상에서 영구 배제(원스트라이크 아웃제)

□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아래의 요령 및 관리지침을 적용

- 「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」
- 「경기도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·사용 등에 관한 운영요령」
- 「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」

□ 기타사항

- 수행기관은 산출된 제품·서비스가 수요처에서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하며, 관련 성과활용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적극 협조해야 함
- 과제선정 이후 경기도 지원금 지급은 2회 이상 분할 지급할 수 있음

## 9. 문의처

□ 사업담당 :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

미래산업전략본부 융합신산업팀

- ☎ 031)259-6642 / ✉ H2plus@gbsa.or.kr

※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e-mail로 문의 바랍니다.

<b>서식</b>	1. 연구개발계획서 2. 과제정보 공개 동의서 및 유사사업 이중수혜금지 서약서 3. 개인정보 이용(제공·조회) 동의서 4. 기업의 범위반 사실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및 사실(부존재) 여부 약약서 5. 참여자격 확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6. 공동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7. 기업의 범위반 행위 치유 이행각서
<b>별첨</b>	1.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요령 2. 산업기술분류표 3. 정량적 목표 항목의 성능지표. 끝.